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4. 13 화 순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4. 16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설 명 자 :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
- 나. 제 안 이 유
 - 정부의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업무의 개선지침 (내무부 '96. 3. 1)에 의거 온라인 주민등록등.초본을 군수도 발급토록 관련 조항 개정
- 다. 주 요 내 용
 -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, 제45조 3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.초본 교부도 군수가 발급가능토록 관련 조항 신설
 - ※ 읍면장도 발급

3. 검토보고 요지. (전문위원 김재휴)

- 정부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인 주민등록업무의 개선지침에 의거 온라인 주민등록등.초본을 군수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4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등.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업무로 화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(출장소)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
- 민원편의 확대시책(내무부 개선지침)의 일환으로 온라인 주민등록등.초본의 교부를 군수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.

2. 개정근거

-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
- 내무부 주민등록업무 관리개선지침 및 도자치 13210 - 344 ('96. 2. 26) 호 관련

3. 주요골자

- 화순군주민등록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권한의 위임 제외사항중 제5호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.초본에 관한 사항(읍.면.출장소장도 가능)을 신설, 군수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함.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에 관한 사항 (읍면장도 가능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<p>(신설)</p>	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") 3. (") 4. (") 5.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.초본에 관한사항 (읍면장도 가능)